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1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0 ~ 2022.1.16) -

January 1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에서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을 발표함 이번 전략은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이 데이터·망·인공지능(D·N·A) 기술과 융합하여 산업 가치사슬 혁신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의 수평적·융합적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OTA(Over The Air,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새로운 제조·서비스 기술 확대, 전기·수소차 및 자율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비 부문 등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 민·관 데이터 연계 및 확보 – 데이터 확보, 분석, 거래를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 미래차 분야 데이터, 수요기반 S/W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추진 ② **미래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 지능화** – 데이터 기반 전주기 관리, 정의로운 사업재편 전환지원, 개방형 혁신 협업체계 구축 – 디지털 생산성(설계+생산) 및 부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기반구축 – S/W 무선 업데이트(OTA) 기술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 기반 확보 – '27년까지 Lv.4+ *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 확산 준비 완료 * Lv.4+ : 자율주행 수준 0~5단계 중 4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위험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단계 이상 ③ **미래차 고부가 서비스 시장 창출** –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조기 개발 검증 – 자율주행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접목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기술 구축 – 미래차 주차·충전·정비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	2022-01-13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무역·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 자동차 · 바이오 · 기계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KOTRA · 무역보험공사 · 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확대 방안과 공급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10대 수출유망품목 R&D 확대(1.2조원), 소상공인 · 내수기업 1,800개사 수출기업화** ② **공급망 관련 법령 보강·정비 착수, 전문적 · 상시적 분석센터 신설 검토** ③ **무역금융 261.3조원(5.4조원↑), 수출마케팅 60%(1,900억원) 상반기 집중 지원** ④ **RCEP*, 한류 등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 마련 ('22. 상반기)**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22-01-13
금융 위원회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13.7월)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나,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 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임 이에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전상장 제도 개편 · 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 –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 · 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 ②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천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年 3천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되어 유가·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 K-OTC(Korea Over-The-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 사전 고지 * 코넥스 시장은 신규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음	2022-01-10

부처	내용	일시
	③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 최대 1천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 · 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 *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펀드 조성 –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복수→단수)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방송법 일부개정」** (2022.7.12. 시행 예정)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제9조의3 · 제105조 및 제108조)** – 종전에는 지상파방송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함 –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② **공사의 공적 책임 추가 (제44조제5항 신설)**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③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제77조)** – 종전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④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 (제90조의3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22- 01-1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12. 시행 예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 (제3조제1항)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함 (제20조제1항)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제20조제2항 · 제3항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제23조제2항)	2022-01-11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 10. 시행, 일부 조항은 2022. 2. 18. 시행 예정)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42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2-01-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12. 시행 예정, 일부 조항은 2022. 7. 12. 시행 예정)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 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의 비용, 시간 부담 등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방식 다양화 (제3조의2)** –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 ·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제3조의5 신설)**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 (제12조의3)** ④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 (제13조의3 신설)** 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제16조의2)** –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2022- 01-1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⑥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 (제24조의5, 제24조의8 신설)** ⑦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⑧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제25조의3)**	
국토 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3. 시행, 일부 조항은 2022. 1. 15. 시행)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 · 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 이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 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임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 (제2조제2호가목)**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②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 (제5조제5항 신설)**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③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④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 (제39조의2 신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2022- 01-13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신요금 감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요금감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제6조의2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1/13(목)~2/2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로 제출	2022- 01-13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범위 확대 및 도시형공장 설립 허용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안 제29조의4제2항) ② 대학교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 시 지정제외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규정 (안 제29조의5제2항) ③ 도시형공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9조의5제3항) ④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고시하는 것을 지정, 운영, 변경 등으로 추가하고, 도시형공장 설립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⑤ 산학융합지구 지정범위가 대학,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교지에 지정 시 1만㎡ 이상인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가능토록 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의7제3항)	2022- 01-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회계기준 마련 (안 제58조의5제7항 및 제8항) – 법 제45조의6 제2항은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나 관련 대통령령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함 – 별도 회계의 수입항목으로 개발이익 회수금과 회계상 자금의 이자 등을 규정(제58조의5 제7항)하고, 지출항목으로 재투자 대상시설의 확충비용,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조사·연구비 등을 규정 (제58조의5 제8항) ※ 의견 제시기간 : 1/11(화)~2/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로 제출	
고용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④ 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⑥ 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 의견 제시기간 : 1/13(목)~2/2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로 제출	2022- 01-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 (안 제37조제2항)** ②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③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 (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④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 (안 제49조의3제1항)** ※ 의견 제시기간 : 1/14(금)~2/25(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	2022-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 이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2022-01-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①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 변경 및 별도의 보완조치 (안 제46조)** –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1/14(금)~2/2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 (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② **비치서류의 확대 (안 제11조)** –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 의견 제시기간 : 1/13(목)~1/2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로 제출	2022-01-1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업 일부 폐업과 동일하고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미 은행업 일부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함 이에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안 제55조제1항제2호)	2022-01-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2인)」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 ·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 · 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7조의3 신설)	2022-0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0조제2항)	2022-01-12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의원 등 10인)」 최근 들어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하고 있음 메타버스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복합적인 서비스 등 최첨단 기술이 융합적으로 구현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편리함을 누리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페이스북”이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는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도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응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2022-0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① 이 법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메타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③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정책의 총괄 · 조정 등 위하여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④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안 제8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⑥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8조) ⑦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 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안 제26조)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6인)」** 오늘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아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었음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KTX 탑승권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여전히 음성통화, 유선인터넷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을 보장하고 있어,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독일, 일본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서 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2022-01-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9조의2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 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물등' 또는 '편집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등)	2022-01-13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매년 100~150명 정도에 불과하여 대기업 수급인력 규모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022-01-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의 경감·근절을 위해서는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이에,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 및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 (안 제21조)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 (안 제21조의2 신설) ③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40조의2 신설) ④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75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2 신설) ⑤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75조제7항 신설)	2022-01-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2022-01-10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또는 추가투표소에 방문해야 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재외투표소의 방문이 어려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제21대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외선거사무의 진행이 필요함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에게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도 지상파 방송사인 점을 고려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외국민 투표편의 개선)** – 현재 공관 외에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재외선거인 수 4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에는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에서 3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추가로 1개소씩으로 완화 – 최대 설치갯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편채널 추가 등)** – 후보자 등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선거광고, 선거연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SBS, KNN, CJB 등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함	2022-01-11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5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022-0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5 제1항 신설) 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마련함 (제14조의5 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 등으로 인해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기술/산업의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②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③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9조) ④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2022-0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⑤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⑥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함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 특례, 특화단지의 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⑧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시험·평가·검증·생산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⑩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⑪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가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⑫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대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⑬ 특별법임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204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법률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섭하려는 것임 또한,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시킴 (안제2조제1항제11호나목) ②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 (안 제54조·제57조·제68조·제87조·제116조 등) ③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의2 신설)	2022-01-11
국토교통위원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년 6월 광주에서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하여 17인의 사상자(사망 9인, 부상 8인)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30조) ②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의3)	2022-0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0조의4) ④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31조 및 제32조) ⑤ 해체공사 관계자가 이 법을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법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4조)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19(수) 14:30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행안위 소관
국회사무처	1/2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3호 발간	
국회도서관	1/20(목)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북한의 핵위협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1/20(목)	「최신 정책정보」 발간 - 주요 외국 싱크탱크기관이 발간한 최신 정책보고서의 요약문과 외국의 주요 정책자료 중 최근 2년 이내의 번역리스트 수록	
입법조사처	주중	「외국 입법·정책 분석」 -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21(금) 10:00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세미나 - 진선미, 김희곤 의원실 공동 주최	의원회관 1세미나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8(화) 10:00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보인다	송석준 의원실,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19(수) 10:00	2022 전력계통 포럼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김주영, 이광재 의원실, 전기신문	의원회관 대회의실
1/19(수) 14:00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 가상 디지털 플랫폼 X의 등장과 국가 핵심전략 기술	조응천, 조승래 의원실, 미래경제연구회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9(수) 19:30	일본 기시다 총리의 미래와 한일 관계	김진표 의원실, 한일의원연맹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0(목) 10:00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 - 메타버스가 미래다!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1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14(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2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화)	「현안, 외국에선?」 제27호 발간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화) 10:00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수) 10:00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장철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수) 15:00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윤관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4(금) 10:00	소득보장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